

의안번호	제 490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90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17. 1.12.)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사직동)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 수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 現, 수탁기관 : 학교법인 충청학원(2014. 1. 13 ~ 2017. 1. 12)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사 업 비 : 667백만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 증진사업
 - 노인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소득보장·재가복지에 관한사업
 - 노인평생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 사업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별첨)

3. 참고사항

가. 現,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사직동)
- 규 모 : 용지 11,985m² ~ 건물연면적 4,023.78m²(지하1층, 지상3층)
- 수탁기관 : 학교법인 충청학원(2014. 1. 13 ~ 2017. 1. 12)
- 사 업 비 : 667백만원(도비 100%)
- 주요업무 : 평생교육,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여가증진 등
- 조직·인력 : 20명(관장1, 사무국장1, 부장1, 팀장3, 팀원14) ※비상근(4명) 별도
※ 관장 : 심의보(충청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 이용현황 : 등록회원 7,084명 ※ 1일평균 이용인원 832명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경과
 - 노인회 충청도연합회('99. 1. 13 ~ '05. 1. 12 / 2년주기 3회)
 - 학교법인 충청학원('05. 1. 13 ~ '17. 1. 12 / 3년주기 4회)

나. 관계법령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17.1.12.)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노인의 여가복지문화 증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민간위탁(5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

I.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II. 위탁개요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사직동)
 - 위탁범위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전반
 - 위탁기간 : 5년('17. 1. 13. ~ '22. 1. 12.)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사 업 비 : 667백만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사무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 증진사업
 - 노인건강증진, 평생교육,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사업 등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 ※ 現, 수탁기관 : 학교법인 충청학원(이사장 유선규, '14. 1. 13 ~ '17. 1. 12)

Ⅲ.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16. 10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11월 회기중)	'16. 11월
③ 수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 - 방법 : 공개모집(공고15일) 또는 재위탁 - 자격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16. 11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공개모집(고득점자 선정) 재위탁(사업실적, 운영효율성 등 고려)	'16. 12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16. 12월
⑥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17. 1. 13

Ⅳ. 세부 추진계획

①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공개모집 : 도홈페이지 공고(15일) 후 사업계획서 접수,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정(고득점자 선정)
- 재 위 탁 : 사업실적, 운영효율성 등 고려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제3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법인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 위탁조건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의 사업 적극 지원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이행

②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개최시기 : '16. 12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6~9명 이내(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수탁자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협력 등
- 계획설명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의 경우 : 고득점기관 선정
 - 재위탁의 경우 : 사업실적, 운영효율성 등 고려 선정

③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16. 12월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수·인계
 - ※ 업무 인수·인계(수탁기관 변경시)

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6. 11월
-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 '16.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6. 12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6.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17. 1. 13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